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56

발의연월일: 2024. 11. 1.

발 의 자: 박홍근 • 이건태 • 한민수

이수진 • 박상혁 • 한정애

박홍배 • 박주민 • 조정식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물출자로서 출자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출자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 ③	제61조(현물출자 절차)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현물출자로서 출자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u>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u>
	의를 받아야 한다.